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773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연, 담당변호사 김종귀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아람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가단5322726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9.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①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순서대로 예시 사진을 일렬로 배치하여 보여주고, 핵심내용은 빨간 네모로 강조한 후 마지막에 정리하는 설명을 덧붙이는 구성, ② 프로페셔널 계정의 필요성과 그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예시 사진을 통해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핵심내용은 빨간 네모로 강조한 후 마지막에 정리하는 설명을 덧붙이는 구성, ③ 프로필 사진과 프로필 이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클로즈업 방식을 이용하고, 실제 사용되는 팔로워 목록창 등을 같이 보여주는 구성, ④ 퀴즈 형식의 구성, ⑤ 비교대상을 보여주면서 각각에 0점, 50점, 100점의 점수를 매겨 어떤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방식, ⑥ 스토리 적용 전후의 프로필 사진을 'A vs B'의 대결형식으로 구성한 방식, ⑦ 계정 컨셉과 타겟 설정을 18개의 네모 안에 키워드로 구성한 방식, ⑧ 질문 형식을 이용해 어떤 사진과 내용을 올려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 구성, ⑨ 예시 사진을 통해 사진비율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함과 동시에 적절한 사진비율을 알 수 있도록 한 구성, ⑩ 사진 보정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사진/영상 촬영 어플과 보정 어플을 아이콘으로 나누어 소개한



구성, ⑪ 릴스 영상과 일반 영상을 비교 샷으로 올리고, 탐색 탭을 캡처하여 실제 노출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릴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성, ⑫ 해시태그를 이용해 자신의 주제와 맞는 성공한 계정을 찾는 방법을 빨간 네모를 이용해 설명하고, 성공한 계정 사진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어떤 게시물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빨간 네모로 표시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한 구성, ⑬ 실패사례 사진은 작게, 성공사례 사진은 크게 표시하면서 VS 구도로 표현한 구성, ⑭ 핵심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글씨체와 글씨 크기 및 색깔을 고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자료에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한다(2025. 1. 14. 자 준비서면).

그러나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후배 회원에게 인스타그램을 상업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파워포인트나 미리캔버스 등의 PPT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그 내용에 별다른 점이 없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어휘, 문구, 사진 등에 원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레이아웃을 보더라도 상하배치, 순차적 정렬, 중앙 정렬 등으로 독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외곽선을 빨간색으로 강조하거나 퀴즈나 질문 방식으로 구성하고, 비교 또는 VS 형식으로 작성한 것 등도 가독성을 높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수단이지는 하나, 창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후배 회원에게 교육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원고는 감정신청 기각이 민사소송법 제290조¹⁾ 단서를 위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21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26. 6. 29. 자 변론재개신청서, 2면), 창작성 유무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신영희

판사 정인재

판사 김기현

1)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